

이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팁 5 -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정서적 지원 동물(Emotional Support Animal)

“치료사가 불안 완화를 위해 정서 치료 동물을 키워보라고 권했어요. 동물을 키우려 하는데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이고, 집주인이 빌딩에서 동물을 기를 수는 없대요. 아직 집주인에게 동물을 기를 예정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 주거법에서는 정서적 웰빙을 위해 동물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서 치료 동물은 특수한 훈련, 등록,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애완동물 금지 정책을 정할 권리가 있지만, 공정 주거법에서는 정서 지원 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우 임대인은 정서 치료 동물을 키우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집에 다른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완화할 수 없는 수준의 물리적 손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당한 자금 또는 행정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하는 사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귀하의 특정 동물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한 개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해야 할 조치: 담당 치료 전문가가 정서적 지원 동물이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정서 지원 동물이 귀하가 가진 장애의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을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소견서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공정 주거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서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신을 직접 작성하십시오. 임대인이 요청하는 경우, 담당 치료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임대인은 귀하의 진단명을 묻거나 의료 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귀하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해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임대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상호 협력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지역 공정 주거 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 공정 고용 및 주거부) 또는 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UD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800-669-9777](tel: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tel: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complaint-forms/>를 방문하십시오.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는 연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 사항: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MHAS, 지역 공정 주거 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은 U. S. Dep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Fair Housing Initiatives Program(주거 및 도시 개발 공정 주거 계획 프로그램)의 보조 기금(보조 기금 #FEOI160050-01-01)으로 제공됩니다.